대구지방환경청 종합감사 결과 보고

2020. 3. 16.

환 경 부
감사관실

목 차

Ⅰ. 감사 개요 ····· 1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2. 감사대상 및 범위 ····· 1

3. 감사기간 및 인원 ····· 1

4. 감사 중점사항 ····· 1

Ⅱ. 감사 결과 ····· 2

1. 계약, 회계업무 ····· 3

2.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후관리 미흡 ····· 4

3. 제도개선 사항 ····· 6

4. 업무효율화 등 업무개선 필요 ····· 9

5. 기타 업무처리 부적정 등 ····· 11

Ⅲ. 모범사례 ····· 15

Ⅳ. 현지 조치사항 ····· 16

1. 과불화화합물 저감조치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 16

Ⅴ. 향후계획 ····· 16

Ⅰ. 감사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환경부 위임사무와 각종 지시사항 이행실태 등을 확인·조사하여 행정능률 향상 제고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2. 감사대상 및 범위

○ **(대상기관)** 대구지방환경청

○ **(감사종류)** 종합감사

○ **(감사범위)** '15년 9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1.15.~2.14.(총 15일, 예비조사 5일 포함)

○ **(감사인원)** 감사반장 등 9명*(환경부 4, 산하기관 3, 시민감사 2)

*환경부(감사담당관, 송윤철, 이영수, 이창선), 산하기관(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시민환경감사관(□□□, □□□)

4. 감사 중점사항

○ 예산·회계, 국유재산·물품관리 적정성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수질, 지하수 등 측정망 설치·운영

○ 화학물질의 허가 및 신고, 화학사고 대응

○ 폐기물, 자연환경, 환경영향평가 협의 적정 여부 등

※ 사전컨설팅 제도설명 및 현지지원

Ⅱ. 감사 결과

< 처분요구 총괄(표)>

◇ 처분요구 26건(주의·경고 9, 개선 5, 통보 6, 현지시정 6)

(단위 : 건수, 만원)

총계			변상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조치
건수	금액	인원							계 (명)	일반 (명)	시정완료 (금액)	인사자료 (인원)	비위 (인원)		
26	-	27	-	-	-	9 (27)	5	-	0 (-)	6 (-)	-	-	-	-	6

※ 모범사례 1건(과불화화합물 저감조치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안)>

구분	지적사항	처분요구(안)
1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인계인수서 미작성	경고(부서)
2	연구용역 인건비 계상 부적정	경고, 주의
3	용역계약 준공검사 기한 미준수	주의
4	"❂❂❂ 중권역 ❂❂❂ 정밀조사" 용역 감독업무 미흡	주의
5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후속조치 부적정	경고(부서)
6	영업정지 처분업체 사후관리 미흡	주의(부서)
7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절차 검토 필요	통보
8	생활화학제품 준수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통보
9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간 방류수 기준초과 처분 형평성 확보 필요	통보
10	초과근무 등 위임전결규정 개정 필요	개선
11	생태경관보전지역 위탁관리대행자 선정방법 개선	통보
12	대구청 자체 운영협의회 운영미흡	개선
13	용역근로자 폭염피해 예방대책 마련 필요	개선
14	드론 등 첨단 환경감시장비 활용방안 마련 필요	개선
15	화학 테러.사고 대응장비 운용계획 수립 구체화 필요	개선
16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조사방법 다양화 필요	통보
17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미준수 및 협의내용 통보기한 초과	주의(부서)
18	확인서 관리대장 관리 미흡	주의(부서)
19	공무직 등에 대한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준수	통보
20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감시원증 반납 미흡	주의(부서)
21	회계직공무원 미임명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	현지조치
22	클린주유소 지정 확대를 위한 확산 노력 미흡	현지조치
2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현지조치
24	대구청 운영 예규의 유지관리 및 시스템등재 미흡	현지조치
25	관인날인 시 내부통제 강화필요	현지조치
26	ASF 대비를 위한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 등 관리철저 필요	현지조치

※ 사전컨설팅감사 현장컨설팅 실시(김정욱 주무관, '20.2.4~5.)

1 계약, 회계업무 부적정

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인계인수서 미작성

○ **(기 준)** 「국고금관리법」 제131조에 따라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변경될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 국고예금잔액증명서, 현금현재액 조서 등 관계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함

○ **(실 태)** '15.9.1.부터 '20.2.10.까지 총 9회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변경되었으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음

⇒ **(처분의견)**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인계·인수 시 관련서류를 갖추지 않고 보관하지 않은 운영지원과**에 대해 **"경고"** 요구

② 연구용역 인건비 계상 부적정

○ **(기 준)**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용역 시 참여연구원 구성, 등급별 인건비 등의 사업비는 기재부「예정가격작성기준」, ❋❋❋❋❋❋위원회의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에 따라 계상·정산하여야 함

<'17~'19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예정가격작성기준, 기재부)>

등 급	기준단가(원/월)	적용단가(원/월)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책임연구원	6,220,458~6,433,726	3,079,435	3,169,323	3,216,863	
연구원	4,769,762~4,933,294	2,361,268~4,000,000	2,430,194~4,000,000	3,750,000~4,500,000	
연구보조원	3,188,426~3,297,742	2,000,000~2,430,000	2,500,000~3,000,000	2,875,000~3,162,500	
보조원	2,391,402~2,436,838	2,841,172~5,000,000	2,200,000~7,000,000	-	

○ **(실 태)** "✠✠✠수계 ✡✡ ✡✡지역 조류 발생 및 거동 특성 정밀조사(1~3차)*" 용역에서 과업수행자[✢✢✢✢연구소(주)]가 관련 규정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수행업체의 인건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사업비(인건비)를 인정하고 정산함

* 1~3차년도 사업은 '17년, '18년, '19년에 각각 수행, 사업비는 각각 25천만원

⇒ **(처분의견)**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산정한 사업비소요명세서(인건비)를 그대로 인정하여 정산한 **업무관련자**에 대해 각각 **"경고", "주의"** 요구

③ 용역계약 준공검사 기한 미준수

○ **(기 준)**「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용역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준공계를 제출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 **(실 태)** 최근 3년간('17~'19년) 146건의 계약 중 20건* (13.7%)이 법정 검사기한 14일을 초과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함

* 130일 초과(1건), 130~50일 초과(2건), 50~10일 초과(10건), 10일이내 초과(7건)

⇒ **(처분의견)**「국가계약법」에 따른 준공검사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관련자**에 대해 **"주의"** 요구, 동일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안내·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운영지원과에 **"통보"**

④ "✣✣✣ 중권역 ✤✤✤ 정밀조사" 용역 감독업무 미흡

○ **(기 준)**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 추진 시「과업지시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연구수행계획서', '공정보고 및 보고회', '성과품 제출' 등)을 준수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은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함

○ **(실 태)** 과업수행자가 연구수행계획서 지연제출(14일→25일), 월간 공정계획(5회)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치하지 않고, 용역성과물(보고서 80부, 요약 20부, CD 5부) 및 부속서류 등의 관리 미흡(부록 데이터 관리상태 미비)

※ ✣✣✣ 중권역 ✣✣✣ 정밀조사(2018년) : ✦✦✦✦협회, 135백만원

⇒ **(처분의견)**「국가계약법」 제13조에 따른 감독 업무와 용역성과물 관리를 소홀히 한 **수질총량관리과 업무담당자**에 대해 **"주의"** 요구

2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후관리 미흡

①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후속조치 부적정

○ **(기 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실 태)** 환경관리과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19.3.21) 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무허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배출업소(확인서 징구)를 환경감시과에 수사의뢰('19.4.2)

- 그런데, 점검 시 배출업소를 폐기물 불법처리로 판단하였다면 배출업체[✧✧✧✧✧✧(주)] 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한 업체[(주)✨✨]도 수사의뢰를 하여야 함에도 배출업소만 수사의뢰 함

⇒ **(처분의견)** 지정폐기물 지도점검과 수사의뢰 과정에서 일관성 없이 행정처리한 **환경관리과**에 대해 **"경고"** 요구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하도록 요구

② 영업정지 처분업체 사후관리 미흡

○ **(기 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허가 취소,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규정」에는 영업정지 처분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점검주기 : 영업정지 1개월(2회 이상), 1~6개월(3회 이상), 6개월이상(4회 이상)

○ **(실 태)** '15.9~'20.2.14.까지 지정폐기물처리업체 영업정지 총 28건 중 17건(영업정지 기간 1개월 16건, 3개월 1건)에 대해 영업정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음

※ 감사일 현재(‘20.2.14.) 2개 업체 영업정지, 폐업(1개), 영업정지기간(1개, 3.1~31)

⇒ **(처분의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환경관리과**에 대해 **“주의”** 요구

3 제도개선 사항

【본부 제도개선】

①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절차 검토 필요[시민감사관 지적]

○ **(현 황)**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52조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 방법 및 위임사항 규정

* 훼손면적×단가(300원/㎡)×지역계수(1~4), 최대 50억원을 개발사업자가 환경부에 납부

- 시행령 제52조(권한의위임)에 환경부는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승인, 환경청은 사업의 관리·감독 등 적정시행 여부 확인 등을 수행

< 자연환경보전사업 추진절차 >

수행기관	환경부						환경청				환경부		환경청
주요내용	수요 조사	→	대상 사업선정	→	사업신청 ·승인	→	착공 신고	→	준공 검사	→	반환금 지급	→	사후관리 (2년)

○ **(실 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 시 환경청은 관할지역 내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환경부가 선정한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과 사후모니터링 결과 접수 등만 하고 있음

- 따라서, 환경청 관할지역 내 대상사업 선정 시 환경청 참여, 사후모니터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환경청의 역할 부여 필요

⇒ **(처분의견)**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시 대상사업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청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환경부 자연공원과**에 **“통보”**

② 생활화학제품 준수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시민감사관 지적]

○ **(현 황)**「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35품목)” 제조·수입 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거나,

-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제품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실 태)** 과징금 산정 시 판매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유형(정도)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도록 하는 기준이 정성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음

위반행위의 유형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억원 초과 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초과 8억원 이하

- 과징금의 조정(감경)도 업체가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기준이 정량화되어 있지 않아 비슷한 사안에 대해 지방청 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큼

⇒ **(처분의견)** 과징금 부과 세부산정기준(위반행위의 유형 및 감경 등)을 정량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 **“통보”**

③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간 방류수기준초과 처분의 형평성 확보 필요[시민감사관 지적]

○ **(현 황)**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행정처분은 개선명령과 과태료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개선명령과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방류수 수질기준항목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유입)
BOD / TOC(폐수), COD(하수) / SS	-개선명령(물환경보전법 제50조제4항) -기본배출부과금(물환경보전법 제41조)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제2항) -개선명령(하수도법 제25조제2항) -기본배출부과금(물환경보전법 제41조)
T-N / T-P 총대장균 군수 / 생태독성	-개선명령(물환경보전법 제50조제4항)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제2항) -개선명령(하수도법 제25조제2항)

○ **(실 태)**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계속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반복적인 개선명령 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곤란하고, 특히 기본배출부과금 항목이 아닌 T-N, T-P 항목의 기준초과가 빈번함

※ (기본배출부과금)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이 부과대상 수질오염항목임

※ (기준초과) (＊＊산단) '18년도 4번 초과 중 T-N초과 3번, (❋❋산단) '19년도 3번 초과 중 T-N, T-P초과 각 1번, (＊＊산단) '19년도 3번 초과 모두 T-N초과

⇒ **(처분의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통보"**

【대구청 제도개선】

① 초과근무 등 위임전결 규정 개정 필요

○ **(현 황)**「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을 마련·운영하고 있으며,

- 대구청 위임전결규정의 경우 5급(연구관)이상 간부들의 '국내출장 명령 및 보고'는 청장, '초과근무 명령'은 과장이 하도록 규정

○ **(실 태)** 과장(5급)은 초과근무 시 본인의 초과근무명령을 본인이 결재하고 있고, ❄❄❄❄❄❄❄의 경우 관할 구역 외 출장은 청장 결재사항이나 본인 스스로 결재

※ ☆☆☆청 초과근무의 경우 5급은 국장, 국장과 총무과장은 청장 결재토록 개정(2019년)

⇒ **(처분의견)** 초과근무 등 복무 관련 결재는 상급자가 하도록 **기획재정과**에 위임전결규정 개정 **"개선"** 요구

② 생태경관보전지역 위탁관리대행자 선정방법 개선

○ **(현 황)**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생태경관보전지역 기본계획 수립·시행업무는 환경청에 위임

- 이에 대구청은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관리 및 생태탐방 안내센터 운영" 위탁관리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매년 경쟁입찰 실시

○ **(실 태)** 매년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응찰자가 없어 유찰(2회)된 후 ✪✪✪✪공단과 수의계약 체결하고 있음

- 이처럼, 응찰자가 없음에도 경쟁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후 위탁관리대행자가 선정될 때까지 관리공백 발생이 우려

⇒ **(처분의견)** 입찰공고 시기 조정과 차기 위탁관리자 선정 시까지 기존의 위탁관리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공백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자연환경과**에 **"통보"**

③ 대구청 자체 운영협의회 운영 미흡

○ **(현 황)** 대구청은 지역환경 현안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협의회('08년, 분기 1회)」, 「대구 경북 ❊❊❊❊협의회('11년, 연 1회)」,「대구 경북 ✺✺✺✺ 환경정책협의회('12년, 연 1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실 태)**「대구경북지역 ❊❊협의회」와 「대구경북 ❊❊❊❊협의회」는 구성 후 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고,「대구경북 ✺✺✺✺ 환경정책협의회」는 '14~'16년 3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미운영

⇒ **(처분의견)** 협의회 구성·운영 필요성 등을 검토(폐지 또는 존치)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과**에 **"개선"** 요구

④ 용역근로자 폭염피해 예방대책 마련 필요

○ **(기 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 시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 태)** '17~'19년 ❄❄❄ 제거작업 시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에도 제거작업이 이루어졌고, 작업 중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폭염 피해 발생 우려

⇒ **(처분의견)** ❋❋❋ 제거사업 등 여름철 폭염(폭우 또는 자연재해 등) 등 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용역(야외 육체노동 등)사업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폭염 등의 대비 대책을 포함하도록 **자연환경과**에 **"개선"** 요구

4 업무효율화 등 업무개선 필요

① 드론 등 첨단 환경감시장비 활용방안 마련 필요

○ **(현 황)**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등 배출사업장 단속 시 기존 단속 장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구입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급('17년)

○ **(실 태)** 대구청은 드론을 '17년에 취득하였으나 실제 활용은 '19년 7월 이후부터 활용하여 '19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활용실적이 없는 것을 지적하였음(단, '20.2.14.까지 97회 단속에 활용하였으나 운용계획 등은 미수립)

⇒ **(처분의견)** 드론 등 첨단 환경감시장비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적극 활용하도록 환경감시과에 **"개선"** 요구

②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운용계획 수립 구체화 필요

○ **(기 준)**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실 태)** 대구청 '20년도 대응장비 운용계획은 대응장비 수급 및 불용계획, 점검계획과 교육·훈련계획 등 수량과 추진일정 등이 구체적·세부적으로 작성되지 않음

⇒ **(처분의견)**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운용계획 수립 시 점검계획,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등을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화학안전관리단**에 **"개선"** 요구

③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조사방법 다양화 필요

○ **(현 황)**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제2차 특정도서 보전 기본계획(2015~2024)」에 따라 독도 자연생태계 정밀조사(5년 1회) 및 모니터링 실시(연 3회)

○ **(실 태)** '16년부터 유인조사 방법(3일/회)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독도의 기상·지리적 특성상 접근이 쉽지 않아, 특정시기의 조사, 지속·반복적 관찰에 어려움이 있음

※ (조사분야) 포유류, 조류, 곤충, 식생, 식물상 5개 분야('16~'18), '19년은 곤충을 제외한 4개 분야

⇒ **(처분의견)**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에 무인센서카메라 등을 활용한 무인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자연환경과**에 **"통보"** 요구

5 기타 업무처리 부적정 등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미준수 및 협의내용 통보기한 초과

○ **(기 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30일 이내, 환경영향평가는 4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승인, 확정하였을 때 30일 이내에 협의 내용 반영결과를 지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실 태)** '15.9.1.～'19.10.31.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총 2,220건 중 933건(42%)이 통보기한 초과(최대 233일)

- 또한, 협의내용 581건(이중 245건은 사업종료 추정)을 승인기관에 통보하였으나, 협의내용 반영결과가 회신되지 않고 있음에도 제출 촉구 등의 조치 미이행

⇒ **(처분의견)** 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자 및 승인기관이 협의내용에 대해 사업계획 반영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환경평가과**에 **"주의"** 요구

② 확인서 관리대장 관리 미흡

○ **(기 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확인서는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 현황 등을 확인서 관리대장에 의해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 확인서 관리대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에서 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실 태)** 환경관리과는 '17.3.1.부터 2019.12.31.까지 지도·점검업무에 사용한 확인서를 관리하는 관리대장을 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관리

⇒ **(처분의견)** 확인서 관리대장을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결재자까지 결재하지 않은 등 확인서 관리대장 관리에 미흡한 **환경관리과**에 대해 **"주의"** 요구

③ 공무직 등에 대한 퇴직연금 최소 적립비율 미준수

○ **(기 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 비율은 '18년 100분의 80, '19~'20년 100분의 90, '21년부터 100분의 100을 적립하도록 규정

○ **(실 태)** '18.12.31. 기준,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26명)에 대한 퇴직연금은 총 298백만원이나, 74%인 222백만원만 적립 중임

< 퇴직연금 재정안정화계획서(2018.12.31. 현재) 발췌 >

최소적립금	금액(원)	적립금	금액(원)
책임준비금	298,450,169	적립금 총액	221,835,808
법정 최소비율	80%	적립비율	74.32%
법정최소 적립금	238,750,135	부족금액	4,986,320

※ (타청 사례) 2019.12.31. 현재 ✷✷청 60('18년 예산 불용), ✷✷**청 97,** ✷✷**청 100**

⇒ **(처분의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이 적정하게 적립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보 노력 등을 하도록 **운영지원과**에 **"통보"**

④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감시원증 반납 미흡

○ **(기 준)**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침」에 따라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 시에는 자격과 요건을 검토하여 위촉하고, 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받아야 함

○ **(실 태)** '19년 신규 위촉한 30명의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 신청자의 자격과 요건(대구청장이 지정하는 환경캠페인 1회 이상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없이 위촉하고 있음

- 또한, 재위촉한 147명과 해촉한 146명 등 293명에게 발급한 "명예환경감시원증"이 반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음

※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이 명예환경감시원증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에 출입하여 법령위반을 주장하며 해당 건설현장의 영업을 방해(현장소장이 ✶✶청에 민원제기), 국가 환경관련 행사 개최를 이유로 지역 내 배출업소를 방문하여 금품을 요구(제보)

⇒ **(처분의견)**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시 지침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지 않고, 해촉 시 발급한 명예환경감시원증 반납 등의 관리가 미흡한 **기획재정과**에 대해 **"주의"** 요구

Ⅲ. 모범 사례

1 과불화화합물 저감조치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추진 배경

○ 페놀사태('91년)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큰 가운데 ✳✳지역 정수장(✳✳, ✳✳)에서 과불화화합물*(PFHxS) 5.8㎍/L 이 검출('18.5)

* **과불화헥산술폰산**은 발암물질로 지정된 항목이 아니며, **방류수 배출기준 규제대상 물질 아님.** 과불화옥탄산(PFOA, Group 2B)은 발암물질로 지정(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 과불화헥산술폰산을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고, 검출된 양이 외국 권고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건강상 우려 수준은 아니나,

- 일부 국가(캐나다 0.6㎍/L, 스웨덴 0.9㎍/L 등) 및 WHO(4㎍/L, 현재 Guideline Value 개발 중)에서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

※ ★★★ 수계 4개 하·폐수처리장*에서 과불화화합물이 먹는물 수질 감시기준(0.07㎍/L) 이상 검출, 전국 실태조사('18.6~8) 0.07㎍/L 이하

* ★★산단 폐수처리장, ☆☆☆☆하수, ✱✱✱✱✱하수, ✲✲✲✲처리장

□ 추진 노력

○ ★★하수처리장에서 과불화화합물 배출 확인('18.6.8)

- 사업장 94곳 전수조사하여 61개소에서 배출 확인(5.18~6.8)

○ 주요 배출사업장*에 대한 저감조치 노력(~'18.6.12)

- 주요 배출사업장(4개소, 전체 배출량의 99.97%)에서 제조원가 상승 등 경제성을 이유로 기존물질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 업체 설득(총 12회 협의) 등을 통해 과불화화합물(PFHxS)을 함유하지 않은 다른 물질을 사용하도록 합의 도출(6.12)

* 주요 업종은 영상 및 음향기기,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이고, LCD모니터 코팅에 사용

□ 추진 성과

○ ✿✿하수처리장 방류수 과불화화합물 농도 감소[5.8㎍/L('18.5.17) ⇒ 0.092㎍/L('18.6.20) ⇒ 0.020㎍/L(12.31)]

- ❀❀❀ 본류는 먹는물 감시기준(0.07㎍/L) 이하 검출

○ 과불화화합물(3종)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지정에 의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산업폐수 감시항목*으로 지정('18.7.30)하여 관리하고 감시항목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계획(환경부)

*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과 수계에서의 검출빈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

※ 업무 담당: 측정분석과 환경연구사 ☆☆☆, 기획재정과 행정7급 ☆☆☆

Ⅳ. 현지 조치사항

번호	지적사항	현지 조치사항
1	o 회계직공무원 미임명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	- 회계직공무원 보조자임을 업무분장 등에 명시하여 회계사고 시 분쟁이 없도록 할 것
2	o 클린주유소 지정 확대를 위한 확산 노력 미흡	- 클린주유소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 등 확산 노력 필요
3	o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업장 점검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자율점검까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바람
4	o 대구지방환경청 운용 예규의 유지관리 및 시스템 등재 미흡	- 각종 규정 제·개정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하여 관리 바람
5	o 관인 날인 시 내부통제 강화 필요	- 관인 날인 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인 관리 철저 바람
6	o ASF 대비를 위한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 등 관리 철저 필요	- 관내에서 ASF 포상금 부적정 수급 수사(언론보도)가 있으니 관리 철저 바람

Ⅴ. 향후 계획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 및 감사원 보고('20년 3월)